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이용균 의원
나. 의안번호: 제2162호
다. 발의일자: 2024.10.15.
라. 회부일자: 2024.10.18.

2. 제 안 사 유

- 기후예산제의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체계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 나. 기후예산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제6조제2항, 제7조~제9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예산제와 탄소중립 정책의 연계성 강화 및 체계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에 흡수·통합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탄녹위에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에서는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인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그 기능이 자문에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기후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성격이 유사한 탄녹위로 주요 기능을 이관하여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도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후예산제의 도입 취지와 탄녹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시 탄소중립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보다 위상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기존 운영위원회에서는 시 재정기획관과 예산 관련 전문가(민간)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으나, 탄녹위에는 위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탄녹위 위원 구성 시 예산 담당 실·본부·국장과 예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